

직제규정 개정 사전예고

1. 개정 이유

조직운영을 효율화하고 재무건전성 개선 등 경영현안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직제를 개편하고자 직제규정을 개정

2. 주요 개정 내용

- 가. 디지털 전환 대응·통솔범위 적정화를 통한 합리적 조직관리 및 미래준비를 위해 경영인프라혁신단을 신설
- 나. 스마트·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ICT추진실을 기획·운영 기능으로 분화(ICT기획처, ICT운영처 신설)
- 다. ESG경영처를 혁신성과처로 개편하여 공사 혁신역량을 강화하고, CS기능(경영지원처·금융기획실 → 혁신성과처)을 통합·이관하여 VOC 채널을 일원화
- 라. 보증관리(이행, 채권회수)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관리센터(인천광역시 전담) 및 경기관리센터(경기 남부지역 관할)를 신설
- 마. 주택도시기금본부·기금사업운영단을 기금사업본부로 통합하여 분산되어 있는 기금업무를 집중, 의사결정체계·정책지원 채널을 일원화
- 바. 기금제도처(수요자·사업자대출, 도시재생 금융제도)를 기금대출(수요자·사업자) 전담부서로 개편(기금지원처)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
- 사. 기금사업처를 신설(기금심사처, 리츠사업처 통합)하고 임대리츠·도시재생 금융지원 기능을 통합 수행하여 정책방향 및 사업별 업무량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

- 아. 유관기능 통합으로 업무효율성·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도시 혁신기획처를 기능별로 분리하여 유관부서로 이관
- 자. 정보보호 최고책임자(CISO) 제도 준수(과기부 가이드라인)를 위해 정보 보안센터를 정보보안처(사장 직속)로 확대 개편
- 차. 조직명칭을 일관된 체계로 관리하기 위해 일부 본사부서의 명칭 정비(리스크관리실 → 처, 준법지원실 → 처, 경영지원처 → 실)
- 카. 영업부서 간 고객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칭 정비
- 타. 소규모 영업부서인 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를 남부주택도시금융1 센터로, 도시금융리츠자산관리센터를 임대리츠자산관리센터로 통합 (남부기금센터·리츠자산관리센터)하여 사업량 변화에 탄력 대응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(도착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기획조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나. 제출자의 성명(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
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<보내실 곳>

- 주소 :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40, BIFC 18층 기획조정실
- 담당자(이메일) : 류동하(rdh870@khug.or.kr)
- 전화번호 : (051)955-5315
- 팩스번호 : (051)955-5306

4. 예고기간 단축사유(기간 20일 미달 시)

조직 및 인력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조속한 규정 개정 필요

※ 별첨 : 직제규정 일부규정개정안

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제2장 조직 제4조(직제의 편성) ① (생략) ② 공사에는 경영전략본부, 금융사업본부, 자산관리본부, 주택도시기금본부, 기금사업운영단, 사장 직속기구인 홍보실, 감사위원회 직속기구인 감사실을 두며, 각 본부 및 단 소속하에 부서를 둔다. ③ (생략) ④ 부서에는 팀을 둘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역을 둘 수 있다. ⑤~⑦ (생략) 제5조(본부의 편성) ① (생략) 1. 경영전략본부 가.~나. (생략) 다. ESG경영처 라. (생략) 마. 경영지원처 바. ICT추진실 사. (생략) 아. 리스크관리실 자. 준법지원실 차. 주택도시금융연구원	제2장 조직 제4조(직제의 편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, -----, -----, 기금사업본부, 경영인프라혁신단, 사장 직속기구인 홍보실·정보보안처, -----, -----,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④ 사장직속으로 또는 본부, 단 및 부서에는 팀을 둘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<u>부서에</u> 역을 둘 수 있다. ⑤~⑦ (현행과 같음) 제5조(본부의 편성) ① (현행과 같음) 1. 경영전략본부 가.~나. (현행과 같음) 다. 혁신성과처 라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<삭 제> 사. (현행과 같음) 아. 리스크관리처 자. 준법지원처 <삭 제>	본부 개편 및 단 재편 부서 신설 조직단위별 팀 설치 근거 명확화 부서 개편 경영인프라혁신단 편제 " 명칭 변경 " 경영인프라혁신단 편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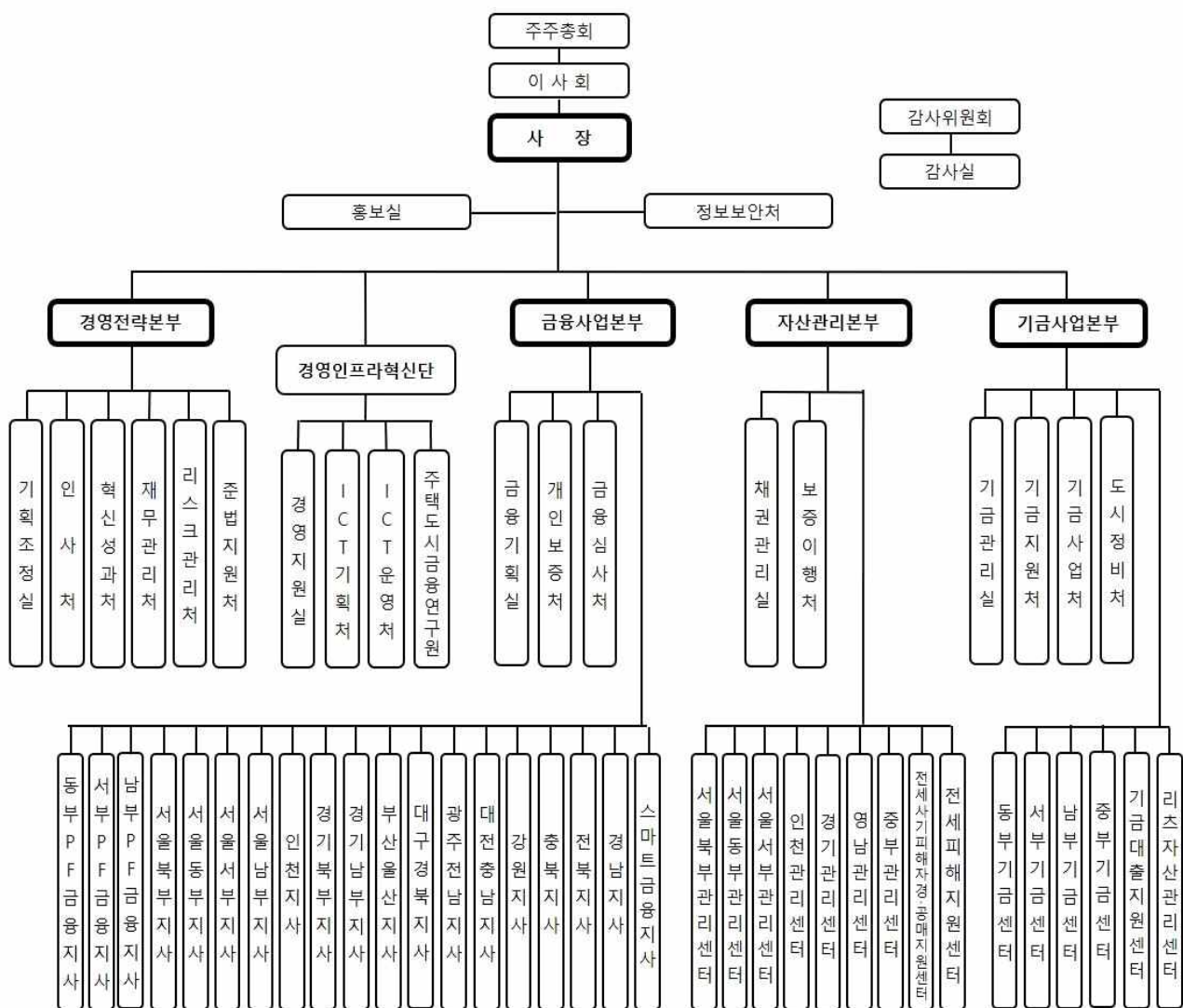
현 행	개 정 안	개정 사유
2. 금융사업본부 가.~다. (생략) 라. <u>동부PF금융센터</u> 마. <u>서부PF금융센터</u> 바. <u>남부PF금융센터</u> 사.~어. (생략) 저. <u>스마트금융센터</u>	2. 금융사업본부 가.~다. (현행과 같음) 라. <u>동부PF금융지사</u> 마. <u>서부PF금융지사</u> 바. <u>남부PF금융지사</u> 사.~어. (현행과 같음) 저. <u>스마트금융지사</u>	명칭 변경 " " "
3. 자산관리본부 가.~마. (생략) <신 설> <신 설> 바.~자. (생략)	3. 자산관리본부 가.~마. (현행과 같음) 바. <u>인천관리센터</u> 사. <u>경기관리센터</u> 아.~카. (현행 바목 내지 자목과 같음)	부서 신설 " "
4. 주택도시기금본부 가. (생략) 나. <u>기금제도처</u> <신 설> 라.~아. (생략) 자. <u>동부주택도시금융센터</u> 차. <u>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</u> 카. <u>남부주택도시금융1센터</u> 타. <u>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</u> 파. <u>중부주택도시금융센터</u> 하. (생략) 거. <u>임대리츠자산관리센터</u> 너. <u>도시금융리츠자산관리센터</u>	4. <u>기금사업본부</u>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<u>기금지원처</u> 다. <u>기금사업처</u> 라.~아. (현행과 같음) 자. <u>동부기금센터</u> 차. <u>서부기금센터</u> 카. <u>남부기금센터</u> <삭 제> 파. <u>중부기금센터</u> 하. (현행과 같음) 거. <u>리츠자산관리센터</u> <삭 제>	기금사업운영단과 통합·명칭 변경 부서 개편 부서 신설 명칭 변경 " " 남부기금센터로 통합 명칭 변경
5. <u>기금사업운영단</u> 가. <u>도시혁신기획처</u> 나. <u>기금심사처</u> 다. <u>리츠사업처</u> <신 설>	5. <u>경영인프라혁신단</u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라. <u>경영지원실</u>	단 재편 기금사업운영단을 기금사업본부로 통합 경영전략본부의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신설> <신설> <신설> ② <u>홍보실</u>은 사장의 직속기구로 한다. ③~⑦ (생략) [별표1](제4조 관련) <u>조직도</u>	<u>마. ICT기획처</u> <u>바. ICT운영처</u> <u>사. 주택도시금융연구원</u> ② <u>홍보실·정보보안처</u>는 사장의 직속기구로 한다. ③~⑦ (현행과 같음) [별표1](제4조 관련) <u>조직도</u> *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직제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사규와의 관계)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사규에서 조직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같음하여 이 규정에 의한 해당 조직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 제3조(신설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관리센터 및 경기관리센터는 업무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.	일부 기능 이관 및 ICT추진실 기능 분화 부서 신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도 변경

[붙임]

개 편 조 직 도

■ 4본부 1단 7실 14처 1연구원 19지사 15센터



#